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2024. 2.



환경부

< 목 차 >

I. 개요	1
1. 목적	3
2. 근거 및 범위	3
3. 정의	4
II. 예산안 신청 및 편성	5
1. 사업편성 기본방향	7
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7
3. 세부사업 구분	8
4. 2025년도 국고보조율	9
5. 예산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	10
6.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14
7. 사업비 산정기준	15
III. 예산의 교부, 집행 및 결산관리	21
1. 기본방향	23
2. 보조금 예산의 교부	23
3. 보조금 예산의 집행	27
4. 재정집행 점검관리	28
5. 보조금 예산의 정산관리	29
IV. 실집행률 제고 방안	31
1. 기본방향	33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33

V. 총사업비 관리계획	37
1. 목적	39
2. 대상사업	39
3. 기본방향	39
4. 총사업비 관리절차	40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45
6. 작성방법	46
7. 총사업비 조정원칙	46
VI. 관련서식	51
서식 1 : 2025년도 예산안 신청서(시·군·구 작성)	55
서식 2 : 예산신청 총괄 현황(시·도 작성)	71
서식 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72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75
서식 5 : 사업수행상황보고서	77
서식 6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81
서식 7 : 재정집행실적보고서	84
서식 8 :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시·군·구 작성)	86
서식 9 :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도 작성)	95
서식 10 :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환경부 작성)	99

I. 개요

I 개 요

1 목적

- 이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2 근거 및 범위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 「바이오가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제14조(재정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제13조(기술진단)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르며, 본 지침과 상위 지침이 상충할 때는 상위 지침을 따름
 - 본 지침 배포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바이오가스법」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4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활용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보조*

* 협의중인 사항으로, 민간보조예산 반영 시 추후 지침 마련

3 정의

- “공공의무생산자”란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바이오가스법」 제5조제1항제1호)
- 본 지침에서 말하는 “유기성폐자원”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각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중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공의무생산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폐기물
 - 라.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다음 시설 중 혐기성 분해시설을 말함(「바이오가스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바이오가스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 * 유기성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열 공급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바이오가스법」 제2조제5호)

Ⅱ. 예산안 신청 및 편성

III 예산안 신청 및 편성

1 사업편성 기본방향

- 1) 예산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실질행률 제고를 최우선 고려
 - 신규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부지확보, 인·허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 선정
 - 계속사업은 연부율을 반영, 사업추진공정 및 예산집행실적을 엄격히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소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
- 2)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광역화로 에너지 생산량 증대 및 경제성 확보
 - 2종 이상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하거나 인접 행정구역 간 광역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 우선 지원
-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및 이용 효과를 고려한 시설 확충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바이오가스의 이용계획이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

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시·도 → 환경부 : '24년 3월 26일까지('25년부터는 하수도 예산 집행요령 신청기한과 동일)
- ※ 시·도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

시·군·구	시·도	환경부	기재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작성·배포	
예산신청 (하수도예산부서)	예산내역 협의·검토 (하수도예산부서)	신청내역 협의·검토 및 예산신청	예산요구액 조정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내역 검토 보조금 교부 신청	신청내역 검토 교부(변경)결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수령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교부결과 통보
수행상황보고 추진실적보고	보고내역 검토 제출	보고내역 검토	
확정내역 확인 (집행 잔액 반납)	확정내역 통보	보조금액 확정 (정산금액 통보)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기관별 작성 및 제출서식

- 시·군·구 : '서식 1' 작성 후 시·도에 제출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수도예산부서에서 제출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관부서가 정해진 경우 주관부서에서 제출가능

- 시·도 : '서식 1'과 '서식 2'를 추가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수도예산부서에서 제출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주관부서가 정해진 경우 주관부서에서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제출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하거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붙임 서식은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 환경부 검토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이 보완이 되지 않을 시 예산 신청에서 누락될 수 있음

3 세부사업 구분

회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명칭)	목-세목(명칭)
< 기후대응기금 > 분야 070 (환경) 부문 079 (기후대기 및 안전) 프로그램 6100 (온실가스감축) 단위사업 6131 (산업저탄소화) 세부사업 623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표시는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내역사업임

4 2025년도 국고보조율

□ 2025년도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율은 현행 유기성 폐자원별 국고보조율에서 10%p 상향 적용하며, 80%p를 상한으로 함
 -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국고보조율(재정사업)

구 분	하수찌꺼기 ^{주1)}	분뇨 ^{주1)}	가축분뇨 ^{주2)}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주3)}
특별시	-	-	-	공동시설 40%
광역시	40%	60%	70%	공동시설 50%
시·군	70%	60%	80% (광역시 군지역 포함)	일반시·군 40% (광역시시설 60%) ^{주4)}

주1) 하수찌꺼기 및 분뇨 : '24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주2) 가축분뇨 : '24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주3) 음식물(음폐수) : '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주4)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국고보조율 산정

- 유기성폐자원별 반입용량(시설용량)에 따른 총사업비에 각각의 유기성폐자원별 국고보조율을 적용, 합산하여 최종보조율 산정
- 국고보조금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민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에서 20%p이내 상향 적용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기존 재정사업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고 보조율은 80%p를 상한함
 - ※ 2019년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사업부터 적용(2018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18.5.28))

(산정 예시)

- 시·군 단독으로 가축분뇨 200톤/일, 하수찌꺼기 100톤/일, 음식물 100톤/일을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고보조율 67.5% 적용

① (가정) 가축분뇨 200톤/일 표준사업비 600억, 하수찌꺼기 100톤/일 표준사업비 300억, 음식물 100톤/일 표준사업비 300억

② (국고보조율)

i) 가축분뇨 : 표준사업비 600억 × 80%(일반 시·군 80%) = 480억

ii) 하수찌꺼기 : 표준사업비 300억 × 70%(일반 시·군 70%) = 210억

iii) 음식물 : 표준사업비 300억 × 40%(일반 시·군 40%) = 120억

→ 총 사업비는 1,200억, 총 국고 지원액은 810억으로, 최종 국고보조율은 67.5%

5 예산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

□ 예산신청 대상

- (신청대상) 「바이오가스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 신규로 설치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통합처리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단독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의 경우 통합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신청 가능
 - 기존에 설치된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시설(통합 처리 우선 검토)
 - * 퇴비화·사료화 등 非바이오가스 생산시설
 - 기존에 설치된 단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시설
 -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보일러, 발전 설비, 고질화 및 개질화 시설 등)
 - ※ 바이오가스 이용시설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설치 시에만 반영가능하며 별도 지원 불가. 이용설비에 대한 총사업비 증액은 재원 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부 최종 협의를 거친 승인사항에 한해서만 국고지원 가능
 - ※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을 위한 고질화 및 개질화 시설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4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 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을 참고
 - ※ 공공하수도 내에서 하수찌꺼기, 분뇨를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 잔재물처리시설 관련 설치비는 공공하수도 예산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을 따름
-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하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지하화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부 최종 협의를 거친 승인사항에 한해서만 국고지원 가능

□ 예산 편성기준

1) 공통조건

- 2종 이상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계획한 사업
 - 통합 시설의 경우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등 개별법에 의거한 상위계획에 '24년까지 시설 설치계획 반영이 가능한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2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승인이 완료 가능한 사업
- (재정) '24년 8월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
- (민간투자(이하 민자)) '24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 가능한 사업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인접 행정구역 간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집적화·광역화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
- 전문기관의 기술진단결과 개선사항 포함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 계획인구,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지역개발사업, 정책방향 등 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시기 및 용량이 적정히 산정되었는지 파악
 - ※ 개발계획에 따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준공 이후 처리량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추이 및 유사 사례비교 등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규모 결정

-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고체, 액체상태의 물질)의 적정 처리계획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여부
 - 총사업비, 총국고 적정성 검토
 - 재원협의 결과 및 낙찰차액 반영여부, 시설용량에 따른 표준사업비에 근거하였는지 및 국고 비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분석
 -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누락 여부 및 적정산정 여부를 철저히 검토
- ※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터무니없게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 후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방지(예산 신청 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2) 사업추진의 시급성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설치, 전환 또는 추가시설 설치가 시급한지 검토
 -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유기성폐자원 처리용량이 부족한지 검토
- * 기술진단결과서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등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추진의 원활성

- 입지선정, 용지보상, 민원, 인·허가 등 부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가 완료된 사업 우선 선정
- 주민 참여사업 사업모델의 구체화 여부 검토(필요시)
 - 주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익공유 계획의 적절성 검토

- 관련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예산 반영 시 자금 사장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
 - 절대공기 및 채용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적정여부 검토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4)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 바이오가스 등 최종생성물의 이용계획이 정부시책과 부합하고 사업효과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뛰어난지 검토
 - ※ 최종생성물의 수요처 확보 및 협의 내용(계약서 등) 제시

5) 기타

-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년도 말 기준 사업진도 및 예산 집행률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정되었는지 검토

6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구 분	예산지원 세부기준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지원 - 2026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금의 40% - 2027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금의 20% - 2028년 이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금의 10% ※ 상기 지원기준은 준공시점 및 재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등 당해년도 최소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 ※ '25년 완공예정사업은 공사계약서상 준공일이 '25년인 경우에 한함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에는 사전용역비(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인·허가 용역 등)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설공사비 등 일부 지원 ○ '24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은 선투자한 설계비 지원

구 분	재정페널티 부과대상사업 세부지원기준(예산편성기준)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으로서 '23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연도별 기준 연부율에서 40% 감액 편성 - '25년 준공사업은 공사계약서 상 공사완료일이 '25년인 경우 잔여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고, 나머지 경우는 준공연도 1년 연장하여 해당연도 연부율 적용 ○ 2년 연속('22~'23) 실집행률 0%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의 실집행률은 전문기관이 실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예산 편성기준, 1). 공통조건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감액 편성(공통조건 전부 미이행 시 예산편성에서 제외 또는 내역조정을 통한 전액 감액)

7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시 고려사항

- 계속사업은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표준사업비 혹은 설계결과에 따라 잠정 산정한 뒤 향후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 (계속사업) 확정 또는 잠정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 추진계획(도급 계약서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계획을 말함)에 따른 실 소요액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후 예산 신청
 -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확정된 총사업비(물가상승분 반영)를 기준으로 잔여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년도 준공예정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함
 - 준공년도가 1년 이상 남은 계속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차수계약 준공일정을 마련, 이월이 방지되도록 사업비를 산정하여 신청
- ※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재원협의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물량 및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신청
 - 다만, 예산신청 시점으로 상위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 위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가 본 지침의 표준사업비와 불일치 시 표준사업비로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예산 신청할 것
 - 신규사업은 사전용역비(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인·허가 용역)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계획(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설계,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 가능하므로 보조사업자는 실소요액을 산정, 예산 신청

-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61조제2항, 제62조 및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 포함된 사업의 국고보조액은 총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관련 상세자료를 별도로 제출(국고예산 반영 이후 재원협의 시 및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시에도 또한 같음)
 - 원인자부담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
 - 광역시설 사업비는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보유분 중 지자체별 반입비율 등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하되, 시설입지 및 운영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산정방법

- 유기성 폐자원별 반입용량(시설용량)에 따라 각각의 유기성 폐자원별 지침*에 따른 시설용량별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우 합산하여 총사업비 산정
 - * 하수찌꺼기 및 분뇨: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가축분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집행관리 지침」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추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관리
-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하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지하화에 따른 공사비는 표준공사비의 1.4배 이내로 산정하여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환경부 최종 협의를 거친 승인 사항에 한해 국고지원 가능
- 유기성 폐자원별 사업비 산정
 - 총사업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지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를 말하며,

총사업비에는 포함하나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등 토지 매입 또는 취득과 관련된 경비도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 이하의 표준사업비 내용은 표준사업비 산정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이며, 정확한 표준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유기성 폐자원별 지침 확인 필요

(1) 하수찌꺼기

< 신설공사비 >				
단위공정	소화조 관련설비 ²⁾	생슬러지 농축기	슬러지 가용화	소화가스 활용 ³⁾
합수식 ¹⁾	$Y = 572.08 X^{0.7485}$	$Y = 172.21 X^{0.6667}$	$Y = 216.26 X^{0.6321}$	$Y = 738.9 X^{0.2887}$
주1) Y : 공사비(백만원), X : 사업 전년도 탈수케익 평균 일발생량 × 1.2 (톤/일) 주2) 소화조 관련설비는 소화조, 가온설비, 소화가스 정제 및 저장시설, 잉여가스 연소설비 등 주3) 소화가스 활용설비는 소화가스 발전등에 관련된 설비				
< 개량공사비 >				
단위공정	합수식	비 고		
1. 교반기	$Y = 3.1882 V^{0.7468}$	Y : 공사비(백만원), V : 소화조 용적(m ³)		
2. 준설	$Y = 0.04 V^{0.989}$	Y : 공사비(백만원), V : 소화조 용적(m ³)		
3. 보일러	$Y = 16.841 X^{0.8913}$	Y : 공사비(백만원), X : 사업 전년도 탈수케익 평균 일발생량×1.2 (톤/일)		
4. 열교환기	$Y = 18.004 X^{0.8864}$			
5. 제습	$Y = 113.96 X^{0.2067}$			
6. 탈황	$Y = 24.036 X^{0.5167}$			
7. 잉여가스 연소기	$Y = 17.632 X^{0.8368}$			
8. 개보수	$Y = 0.544 V^{0.8399}$	Y : 공사비(백만원), V : 소화조 용적(m ³)		
9. 생슬러지 농축기	$Y = 115.17 X^{0.5795}$	Y : 공사비(백만원), X : 사업 전년도 탈수케익 평균 일발생량×1.2 (톤/일)		
10. 슬러지 가용화	$Y = 244.63 X^{0.6324}$			
11. 소화가스 활용	$Y = 838.35 X^{0.2884}$			
※ 상기 단가는 “하수도시설 표준사업비 적정성 검토 연구, (2023.6, 환경부)” 기준이며 공사비는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각 공정 공사비를 합하여 산정 ※ 상기 함수식으로 표준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를 모두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자료: '24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 분뇨

< 신설 및 증설사업비 >	
단위공정	사업비 함수식 ¹⁾
1차 처리 ²⁾	$Y = 130.91 X^{0.7568}$
2차 처리 ³⁾	$Y = 111.84 X^{0.9567}$
3차 처리 ⁴⁾	$Y = 652.66 X^{0.6685}$

주1) Y : 사업비(백만원), X : 시설용량 (m³/일)
 주2) 1차처리 : 물리적 처리후 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주3) 2차처리 : 물리적 처리+생물학적 처리후 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
 주4) 3차처리 : 연계처리 없이 처리후 방류하는 단독처리

자료: '24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3)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구 분	시설용량	표준공사비	비 고	
음식물	150톤/일 이하	4.14억원/톤	폐수처리(생물학적 처리)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수 미처리 시 실시설계후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에서 조정 가능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88억원/톤		
	400톤/일 초과	3.67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2.58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32억원/톤		
	400톤/일 초과	2.18억원/톤		
통합	음식물	150톤/일 이하		3.62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3.40억원/톤
		400톤/일 초과		3.13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2.34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11억원/톤	
		400톤/일 초과	1.92억원/톤	

자료: '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4) 가축분뇨

(단위 : 백만원/m³)

구 분		시설용량	표준사업비	비 고	
신규	바이오가스화 + 소화액 정화단독	50m³/일	402	연계관로 공사비용은 현장특성에 맞춰 향후 자원협의를 반영 필요 ※ 관로공사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7.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100m³/일	355		
		150m³/일	314		
		200m³/일	289		
	바이오가스화 + 소화액 정화연계	50m³/일	360		
		100m³/일	313		
		150m³/일	289		
		200m³/일	273		
	바이오가스화 + 소화액 액비화	50m³/일	307		
		100m³/일	265		
		150m³/일	241		
		200m³/일	229		
	기존시설 + 바이오가스화 공정 추가	-	230		· 바이오가스화 공정(혐기성 소화조 등) 외 추가공정은 자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 상기 단가는 '22년 예산편성 기준, '23년 이후 예산편성 기준 단가는 건설공사비 지수(환경정화시설) 상승분을 반영하여 적용 ※ 해당 시설용량이 표준단가표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단가 산정,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개선사업의 경우, 기술진단 보고서 상 개선비용을 기초로 산정하고,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				

자료: '24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집행관리 지침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설계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Ⅲ. 예산의 교부, 집행 및 결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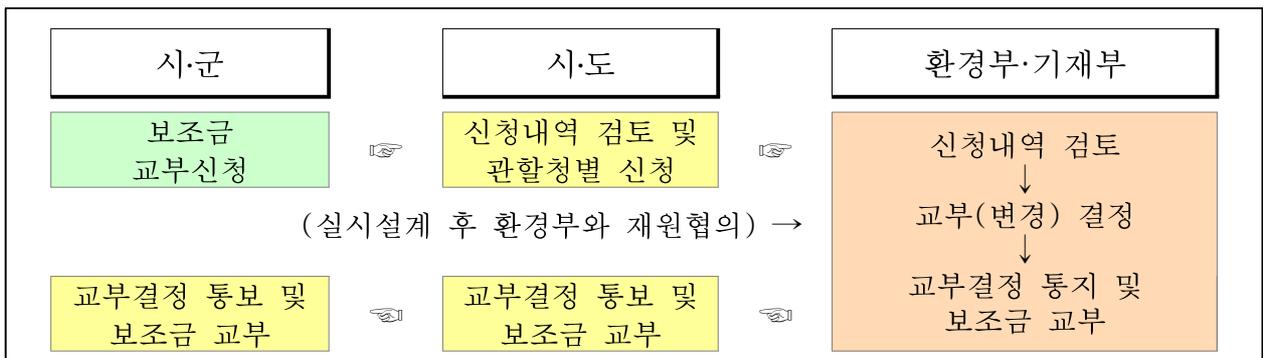
예산의 교부, 집행 및 결산

1 기본방향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의 집행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2024년도 집행목표 상반기 실집행률 60%, 연말 실집행률 90% 이상
 - 환경부, 시·도, 기초 자치단체 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 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 시기 조정
 - 환경부는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보조금법 제25조제2항)

2 보조금 예산의 교부

- 예산 교부절차



가. 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 → 환경부)

- 신청방법 (보조금법 제16조)

- 시·군·구는 집행실적,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를 거쳐 환경부에 신청

- 시·군·구는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단계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검토 및 조정하여 신청

□ 신청서류 (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3」)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서식 3」의 붙임서식)를 교부신청서에 첨부

나. 교부결정 및 통지 (환경부 → 지자체)

□ 교부결정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등

□ 교부결정의 통지 (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서식 4」)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환경부 → 지자체)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제3항)

- 환경부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9조)

- (1)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4)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6)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7)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8)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의2, 시행령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 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8)”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에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

라. 보조금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보조금법 제34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보조금법 제34조 제2항)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본 사항에 한하여 재이월 가능)
-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년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3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지자체→환경부)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지자체 → 환경부)

○ 보고대상 및 기한

-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
- 작성시기 : 매분기말 기준
- 제출기한 : 다음분기 시작일 5일까지(지자체 → 환경부)
- 제출서식 : 사업수행상황 보고서(서식 5)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 환경부는 보조사업별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을 조치

□ 검사 및 확인 (환경부, 보조금법 제36조)

○ 현장 검사·확인

-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검사·확인 수행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 명령시
- 보조사업의 정산(추진실적) 보고서

4 재정집행 점검관리

□ 재정집행 점검반의 구성·운영

- 환경부는 필요시 관할 광역시 및 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
 - 환경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상황을 확인 및 독려하고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 점검회의에서 논의

□ 재정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자치단체)는 “서식 7의 붙임서식”에 의거 소관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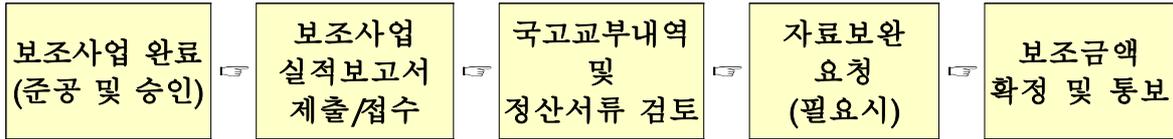
- 「IV. 실집행을 제고 방안」에 따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예산삭감 등 집행구조개선 지속 추진

5 보조금 예산의 정산관리

- 실적(정산) 보고 (지자체 → 환경부, 보조금법 제27조)
 - 보고대상 및 기한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종료사업
 - 제출기한
 - 준공사업 및 폐지승인 사업 :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료사업 : 종료 회계연도 기준 익년 1월 20일까지
 - 제출서식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서식6)
 -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집행확인에 필요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계약내역서 포함),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액의 확정 및 정산(보조금법 제28조 및 제29조)
 - 환경부는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 통보(보고)
 - 보조금 정산시 환경부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
 - 검토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에 요청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환경부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 요구

<정산절차 및 기준>

○ 정산절차



○ 정산기준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 지출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정산확인서 : 준공금액과 계약금액 불일치시 제출 ○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좌측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 발행비, 개업비, 개업비용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구입비 (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관급 자재	○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수조서 ※ (1) 소액의 물품구매인 경우 내부결재 문서로 대체 (2) 지출결의서 금액과 납입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대체	
시설 부대비	○ 부대비비용: 방한화, 안전화 등 안전용품비, 사업 관련 심의비용 등 공사이행을 위해 필수적 소요되는 비용, 영수증·고지서 등 제출	
민간 투자사업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계약서, 지출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세금계산서	

※ 기타 사전예산협의, 자원협의, 총사업비 최종확정내역, 국고 확정 및 교부내역,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위수탁협약서 등 정산관련 자료 반드시 제출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행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IV. 실집행률 제고 방안

IV 실집행률 제고 방안

1 기본방향

- 2024년도 예산 실집행률 목표 : 상반기 60% 연간 90% 이상
- 기관별(지자체, 환경부) 집행률 제고 대책 추진
 - 환경부, 시·도, 기초 지자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부진한 사업은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 환경부는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보조금법 제25조제2항)

2 사업단계별 집행률 제고 방안

- 사업선정·편성 단계 개선
 - 부지확보, 사전 행정절차, 설치인가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편성
 - 사업추진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등 당해연도 최소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 설계 중인 사업은 연내 부지선정,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공사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편성
 - 낙찰차액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등 이·불용액 최소화
 - 집행부진 사업은 재정패널티를 부과, 조기집행 유도
- ※ 계속사업으로서 '23년말 기준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준공연도별 기준 연부율에서 40% 감액 편성(2년 연속 실집행률 0%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예산 집행관리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
 -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병행 신청)
- 예산집행실적 주기적 점검 실시
 - 전년도 이월사업 등 부진사업은 재이월 단계에서 집중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집행관리(부진사유 파악, 매월 지자체 집행노력 실적 등 확인)

□ 실적행률을 기준으로 부진사업 예산 감액지원 및 페널티 적용 (14p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참고)

구 분	재정페널티 부과대상사업 세부지원기준(예산편성기준)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으로서 '23년말 기준 지자체 실적행률 50% 미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연도별 기준 연부율에서 40% 감액 편성 - '25년 준공사업은 공사계약서 상 공사완료일이 '25년인 경우 잔여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고, 나머지 경우는 준공연도 1년 연장하여 해당연도 연부율 적용 ○ 2년 연속('22~'23) 실적행률 0%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의 실적행률은 전문기관이 실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예산 편성기준, 1). 공통조건'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감액 편성 (공통조건 전부 미이행 시 예산편성에서 제외 또는 내역조정을 통한 감액)

□ 사업의 취소 및 국고 환수

- 2년 연속 미착공한 계속사업은 사업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기 교부된 국고는 이자 포함하여 환수조치

-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부지, 사업규모, 사업추진방식, 가스이용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추진될 경우 사업 취소도 가능함

V. 총사업비 관리계획

1 목적

-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 대상사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원 이상인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 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3 기본방향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완공 예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시,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완공연도에는 총사업비 변경 불허

4 총사업비 관리절차

사업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순환경제 시행계획·집행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수립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조사 후 추정 총사업비 산정 기본계획 수립 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신규등록보고서 제출(대상 규모일 시)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의거 예타면제 협의
기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부 협의 및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실시 설계 및 재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환경부와 재원협의 (실시설계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재원협의와 총사업비 변경을 일원화하여 진행) 재원협의 의견 반영 후 총사업비 변경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
발주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발생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변경 요구
시 공 및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 전 또는 착공 후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부와 협의 후 승인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총사업비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변경 요구 (완공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불가)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
(지자체 신청 → 환경부 → 기획재정부 승인)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내용

사업단계	총사업비 관리 주요사항
기본계획	(107조) 관리대상 사업은 매년 1월말까지 <u>신규등록보고서</u> 제출 (31조) 일괄입찰사업은 <u>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u> 총사업비 협의*
기본설계	(18조) <u>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u> 총사업비 협의* - 제출서류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실시설계	(23조) <u>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입찰·발주 이전에</u> 총사업비 협의* - 제출서류 : 설계VE 결과,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제22조),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진행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협의*
공사 발주 및 계약	(25조) 기재부에서 승인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주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u>입찰공고 이전에</u> 총사업비 협의* (26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시공	(27조) <u>공사계약 변경 이전에</u> 총사업비 협의* - 조정 가능 사유(제64조) :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법령 제개정 및 연약지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준공	(110조) 사업이 <u>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u> 제출

*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신규사업 설치계획은 상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반영하도록 해야함(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순환경제시행계획)
- 보조사업자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시 동 기본계획의 재정계획을 근거로 총사업비 협의

다.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제21조의 예타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에 따라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 지원이 없었던 신규사업만 대상(다만, 사업 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됨)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면제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제3항)
 - (절차) 시·군·구 → 환경부(해당 과) →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재정부(위원회 심의) → 면제 여부 결정 통보

라. 신규등록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 최초 편성년도 1월말까지 신규등록보고서(총사업비 관리지침 붙임9)를 환경부로 제출(추경사업은 추경 확정 후 10일 이내)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된 경우 조정요구·조정승인 절차 후 다음년도 1월말 까지 신규등록

마. 기본설계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 하여 이후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최소화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검토 및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필요시) 시행

바.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환경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필요시)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설계검토 및 제22조에 따른 단가 적정성 검토 시행

사.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이하 “재원협의”)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화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재원협의 요청 시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재원협의 신청시기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포함) 이후 '정부고시사업은 RFP고시 이전, '민간제안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실시계획 승인 의뢰 전)

○ 환경부는 재원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사업내용·규모·기간·총사업비의 변동사항과 그 사유, 국고지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원협의 의견 또는 총사업비 변경승인 통보서를 작성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환경부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기술검토 의뢰서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재원협의 기술검토 의견 또는 총사업비 조정 기술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아. 발주 및 계약

○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 확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낙찰차액) 발생 시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시설부대 경비 포함하여 감액)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시공 및 준공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환경부와 요청·협의하고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필수
 -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다음연도에 완공되는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 완공년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물가상승분 금액으로 공사비 정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완공될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5) 제출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신청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사유발생시) (10일이내)
-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2.20까지) (2.28까지)
- 제출서류 : 총사업비 조정요구신청서(서식 8, 서식9), 그 밖의 참고자료
 - ※ 신청서의 작성은 동 서식에 의거 한글파일로 작성 제출(작성서식의 임의변경 불허)

6 작성방법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별도 첨부
 - 작성서식에서 총 국고는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총 국고(보조)를 말하며, 그 이외에는 전체사업비(국고, 지방비, 부담금 등)를 말함

7 총사업비 조정원칙

< 기본 조정 원칙 >

- 사전 협의 없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이를 사유로 신청한 총사업비 변경은 불인정
-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불인정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불인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 방식”을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참조)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경은 지수조정방식 또는 품목조정방식 적용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3, 2010.1.4) 제12장의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방법에 따라야함
-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 1차 계약 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총사업비 변경(및 사업내용 변경)은 불인정
 - 다만,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신청시 물가인상예상분에 대한 물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

① 보상비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 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1배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② 공사비

- 개념 :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 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 후 계약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

③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함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감리효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관리비)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관계규정(예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단,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설계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효율을 적용하여 조정

VI. 관련 서식

VI.

관련 서식

서식 1 : 2025년도 예산안 신청서(시·군·구 작성)	55
서식 2 : 예산신청 총괄 현황(시·도 작성)	71
서식 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72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75
서식 5 : 사업수행상황보고서	77
서식 6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81
서식 7 : 재정집행실적보고서	84
서식 8 :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시·군·구 작성)	86
서식 9 :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도 작성)	95
서식 10 :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환경부 작성)	99

[서식 1] ⇒ 시·군·구 작성서식

2025년도 예산안 신청서

시·군·구 명

I.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4예산	'25예산 요구					비고
		단위 사업장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24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

II. 사업별 예산설명자료

내역 사업명 (신규, 계속)

[작성참고]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기후대응기금 >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			'25년 예산 요구		
		'22까지	'23년	'24년	계	국고	지방비

1. 사업개요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당해연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술
-

사업내용

- 전체사업내용

설치예정부지 (주소)		시설규모(톤/일) (음식물/가축분뇨/ 하수찌꺼기/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민간자본 (백만원)	
국고지원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예정사업기간 ¹⁾	yyyy.mm ~ yyyy.mm
가동개시연도		광역화 여부 (광역화 지자체명)	여 / 부 (,)

주1)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 그간 사업 추진실적

-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 '2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예산요구와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향후 사업추진계획

- '26년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잔여 사업내용을 작성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총사업비	투자실적			'25년 신청 예산	'26년 이후 예산
		'22년까지	'23년	'24년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부담금						
- 민간투자비						

※ '25년 예산지원기준(계속사업,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에 따라 산정)

(단위 : 백만원)

총국고(A)	'24년까지(B)	잔여국고 (C = A-B)	완공연도 지원기준(D)	재정페널티 (E)	'25년예산 (F=D-E)	'26년이후 (G=C-F)

□ '25년 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량	총사업비	'23까지	'24년	'25년 요구	
					금액	산출근거
총사업비						
1. 공사비	00톤/일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4. 기타						

2. 사업추진현황

□ 행정절차 진행현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 추진완료 / 추진예정
 - 추진사항 기재
 - (예시) '23.11.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자료 환경청 제출
 - '24.0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추진완료 / 추진예정
 - 추진사항 기재
 - (예시1) '23.1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 (예시2) '23.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4.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예비타당성조사 : 추진완료 / 추진예정
 - 추진사항 기재
 - (예시) '23.10.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기재부 제출
 - '23.12. 예타 면제 대상 승인
- 기본 및 실시설계

구 분	설계용역사 선정	설계경제성 검토(VE)	건설기술 심의	재원협의	설치인가
접수일 (발주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완료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현재 추진공정률(3월기준) : 예시) 설계중 80%

※ 기타 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점용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를 진행중인 경우 추진사항 별도 작성

□ 사업추진현황

구 분	용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총괄)	1차분 공사	2차분 공사	공사중지	시운전	공사준공
계약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완료일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현재 추진공정률(3월기준) : 예시) 공사중 80%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 기간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예) 실시설계(23.2~24.2)중 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악취발생, 부지보상, 지가하락 등)로 설계중지(23.5~)

-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기술

※ 예) 지역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실시 또는 시설 위치 재선정 등 지역주민과 협의후 사업재개(23.9~),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5개월 지연, 24.7월 설계완료 예정

□ 특기사항

- 감사기관, 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기타 사업추진 특기사항 기술

□ 건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기술

3. 결산현황 및 예산집행계획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국고							
	지방비							
	기타							
2022년	국고							
	지방비							
	기타							
2023년	국고							
	지방비							
	기타							

○ 연도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사유

- 부지매입지연, 행정절차 기간 과다 소요, 채용조달문제, 계약체결, 기성금 지급방법 및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 '24년도 예산집행 계획

- '23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24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 '25년도 예산집행 계획

- '24년도 예산 이월예상액과 '25년도 예산 요구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 주요공정별 집행현황 및 계획

구분	계약상황		예산액 (백만원)	예산집행상황(백만원)				
	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계약액	'23까지	'24년	'25년	'26이후
◆ 총사업비			13,000	12,400	1,400	2,900	5,500	2,600
◦ 용지보상	21.2.1	21.3.2	500	500	500			
◦ 기본설계	21.2.20	21.11.30	300	270	270			
◦ 실시설계	21.2.20	21.11.30	700	630	630			
◦ 공사발주(총괄)	22.2.1	24.6.30	9,300	9,000				
- 1차분	22.2.1	22.11.30		2,000		2,000		
- 2차분	23.2.1	23.11.30		5,000			5,000	
- 3차분	24.2.1	24.6.30		2,000				2,000
◦ 감리비	22.2.1	24.6.30	500	400		300		100
◦ 폐기물처리비			300	300		100	100	100
◦ 시설부대비			500	400		200	100	100
◦ 기타			600	600		300	300	
◦ 시운전	24.6.30	25.3.30	300	300				300
◦ 준공일	25.5.1							

4. 총사업비 변경 여부(계속사업)

총사업비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 ('yy.mm)	재원협의 ('yy.mm)	1차변경 ('yy.mm)	2차변경 ('yy.mm)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원인자				
	민간투자				
사업기간		'yy ~ 'yy			

5. 사업 타당성 검토(신규사업만 작성) ※ 필요시 별도 설명자료 첨부

※ 지침 II.예산안 신청 및 편성 “예산편성기준(p.11)” 참고

□ 금회시설 계획(총괄표)

시설명	00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시설위치		
가동목표년도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상위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광역화(지자체명)		
폐기물 종류별 계획처리량	구분	계획처리량(톤/일)
	계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기타(폐자원 종류기재)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바이오가스 활용계획	(내부) 00 활용 (외부) 00 활용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예시) 소각, 매립 등
	소화폐액	(예시) A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등
	부지확보여부	(예시) 확보 / 000시설 내 여유부지 활용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광역시설 계획의 필요성
 - 광역화 시 지자체 간 광역화 협약문서 또는 협의문서(지자체장 보고)를 제시하고, 통합 처리 시 유기성폐자원별 관리기관(부서)과의 협의문서, 내부방침 보고문서(지자체장 결재문서 등) 등 협의사항 자료를 제시
 -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통합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예산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 당해사업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순환경제 시행계획, 가축분뇨기
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를 기재
 - 상위계획 내용 및 금회 반영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
 - ※ 상위계획 상 해당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상위계획을 부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재
- 계획인구,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지역개발사업, 정책방향 등 여
건변화에 부합한 시설규모 및 설치시기인지 제시
 - 시설규모 산정 시 가동일수는 300일/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규
모산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시
 - ※ 준공 이후 처리량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추진현황, 유
기성폐자원 발생량 추이 및 유사 사례 비교 등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
-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제시
 - 시설용량에 따른 표준사업비 근거하였는지, 국고 비지원대상 포
함여부, 원인자부담금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원인자부담금 반영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적정 처리계획 및 악취방지계획 제시

- 직접처리 시 기존시설 활용방안 또는 신규시설 설치계획(소각 등)을 설치부지와 함께 제시하고 위탁처리 시 위탁처리 업체 자료 제시

- (예시)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예시) 소각, 매립 등
	소화폐액	(예시) A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침출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기타	
처리(예정) 부지	확보/미확보	(예시) 000시설 내 여유부지 활용

※ 유지·보수 계획, 비상상황 발생 시 해결방안 등 기재

※ 공공하수도 내 잔재물 처리시설 설치비는 공공하수도 예산으로 별도 신청

□ 사업추진의 시급성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처리용량 부족, 대규모 개발계획 등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의 시급성 제시

- 기존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우 기술진단결과 제출

- (예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22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톤/년)				'22년 바이오가스 생산량(m^3 /년) (A)	바이오가스 목표량(m^3 /년) (B)	달성도 (%)
음식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분뇨			
					Σ 유기성폐자원별 발생량×생산계수× 회수계수×0.5*	A/B

* 바이오가스 목표율로 50% 적용

□ 사업추진의 원활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타면

제 절차 여부를 기재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 여부를 기재

※ 관련 절차 증빙자료 제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상사업은 관련 절차 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보고서 제출

○ 시설 설치부지 확보 여부를 제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정도 기재

※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사용허가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설명회 개최 등 입지선정 절차 정도 등 부지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지역주민 참여방안(이익공유, 출자, 협동조합 등) 또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하고(필요시) 지역주민 수용 정도를 현 사업신청시기 기준으로 작성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가능하며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현황, 주민의견수렴 반영사항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

○ 관련 사전 행정절차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기간 적정여부를 제시

- 사업추진일정을 각 단계별로 적정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시

- (예시)

사업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	2	3	4	1	2	3	4			
상위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관련 협의											
공사											
시운전											
준공											
주민참여											

□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 바이오가스 등 최종생성물의 이용계획 제시하고 활용처 확보 여부 및 협의 문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고 경제·환경·사회적 이익 발생 효과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제시

- (예시)

활용계획	시설 내부 활용	(예시) 소화조 가온, 슬러지 건조 등
	시설 외부 활용	(예시) 도시가스 공급, 발전, 수소 전환 공급 등
바이오가스 생산량(m ³ /일)		
바이오가스 이용량(m ³ /일)		(예시) 소화조 가온(00m ³), 도시가스 공급(00m ³)
효과분석(경제적 효과, 예상수익 등)		

6. 총사업비의 적정성

- 표준사업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상 재원계획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표준사업비	총사업비 요구	산출근거
총사업비				
1. 공사비 소계				
◦ 공사비	00톤/일			
◦ 폐기물처리비(톤)				
◦ 기타공사비				
2. 용지보상비	00m ²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00개월			
◦ 감리비	00개월			
◦ 시설부대비				
4. 기타				

7. 참고자료

지자체명	완료 예정 사업 수	실제 준공 사업수(A)	정산서 제출 사업 수(B)	정산비율 (B/A, %)	비고
00	0건	0건	0건	0%	

※ 2020년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한 정산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8.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부서	직명	성명	연락처
작성자				
확인자				

※ 기타 근거자료의 첨부양식은 「24년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서식1의 붙임서식] 참고

[서식 2] ⇒ 시·도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시·도명

■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4예산	'25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 (시군 합계)							
· 내역사업장명							

※ '24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서식 3의 붙임서식]

사업추진계획서

세부사업명		기관명
단위사업장명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시설용량 : 톤/일(하수찌꺼기 00, 가축분뇨00, 음식물류폐기물 00, 기타)
- 사업기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보조 %, 지방비 %, 기타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	'24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국 고	소계				
	보조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집행실적 및 이월금 보유현황

이월액(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기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금회신청액	예산액	기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2. 사업 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2000. 현재 사업진도 :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24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분	'24예산 현액			주요 추진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 이월액	'24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4.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5.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기술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자 : 00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2. 예산과목 : 000(분야)-000(부문)-000(프로그램)-000(단위사업)-
000(세부사업)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세부사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사업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4. 교부조건

-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마.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환 경 부 장 관

[서식 5]

사업수행상황보고서

(2024. / 분기)

세부사업명		보고기관명
단위사업장명		

1. 사업개요

- 시설의 위치 :
- 시설용량 : (톤/일)
- 사업기간 :
- 기타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추가)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B)				계(C)			
계									
국 고	소계								
	보조비								
	융자비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 사업진도(공정률) : 00000 설계단계 (%)
- 그간 추진실적(예)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0000 권소사업)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예산지원 가능여부 환경부 사전 협의
- '00. 00. 00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검토의뢰(PIMAC)
- '00. 00. 00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본협약 체결(0000↔0000)
- '00. 00. 00 : PIMAC 민간제안서 검토의견 접수
- '00. 00. 00 : 제3자공고(안) PIMAC 검토의뢰
- '00. 00. 00 : 제3자공고(안) 검토결과 접수
- '00. 00. 00 : ㄱ

○ '24년도 월별 추진계획

연 도	분 기	월	추진내역	공정율(%)
'24년	1분기	1월		
		2월	제3자공고	
		3월	사전자격심사	
	2분기	4월		
		5월	제3자 제안 평가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3분기	7월	협상	
		8월	민투 심의 및 실시협약	
		9월	실시설계	
	4분기	10월		
		11월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12월	착공	10%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4분기 집행현황						
	'24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국고							
- 보조금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민간자본							
○원인자부담금							
○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4. 이월 또는 불용 발생가능 사업 (3/4분기 실적 제출시 작성)

< 사업명 >

- 이·불용 발생 가능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사유 등 명시
- ※ 단순 집행잔액 불용액은 작성 제외

< 이월사업 집행 현황 및 계획 >

(단위 : 천원)

당초 예산액	이월액	실 집행액	집행 현황(누적)	향후 월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월 : 공사대금 ○백만원 지급 ▪ 0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월 : 인건비 ○백만원 지급 ▪ 0월 : … ▪ 0월 : 운영비 ○백만원 지급 (이월액 전액 집행 완료)

[서식 6]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m ³)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20 ~20 (200.00.00.)		00톤/일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연도별 재원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2022									
2023									
2024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세부내역

(단위 : 원)

합계	총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금액	채주	비고	
공사비	2019-06-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20-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20-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20-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20-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21-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21-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21-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OO전기(주)		
	2021-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OO전기(주)		
	2022-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OO전기(주)		
		소 계		4,030,000,000		
	설계비	2017-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9-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리비	2019-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0-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21-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19-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OO		
	2019-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20-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OO		
	2020-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OO		
	2020-07-30	감독관 출장비(업부협의)	500,000	이OO		
	2021-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21-05-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OO		
		소 계	4,000,000			
집행내역 총계			4,658,000,000	-		

4.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 국고보조금 정산 원칙 및 유의사항

- 보조금의 정산 시 환경부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붙임9) 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야하며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 ※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VI. 총사업비 관리계획 - 2. 총사업비 산정기준 가. 총사업비 산정 시 고려사항' 참고

[서식 7]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20 년 월말 기준)

재정집행점검반 운영실적

○ 집행점검회의 개최 실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 현장점검실적

일시	점검대상시설	점검자	점검 및 조치내용
	단위사업장명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2024년 월말 기준, 백만원)

세부사업별	환경청			보조사업자			
	'24예산 현액(A)	집행액 (B)	A/B (%)	전년 이월액(C)	예산현액 (B+C=D)	집행액 (E)	E/D (%)
소관합계							
○ 바이오가스시설 설치							

○ 단위사업장별 집행내역 : 붙임(서식) 참조

○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계획대비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제시

[서식 7의 붙임서식]

단위사업장별 집행내역 ('24. 월말.기준)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 장명	사업량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률)		
					'24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구분	전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C)	지출액			집행률 (D/C)	
											계 (D)	전년 이월액			'24예산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 사업진도(공정율)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11.3월), “실시설계중(20%)”, “공사계약(10.1.20), “공사중(공정율 60%)”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 사업량은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용량(톤/일)을 기준으로 표기, 국고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은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원인자부담금이 있을시는 비율 별도 산정)”으로 산정기입

※ 엑셀시트(EXCEL SHEET)로 작성

[서식 8] ⇒ 시·군·구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

시·군·구 명

I.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A)	변경요구(B)	B-A	%	
소관합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II.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B-A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변경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III.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자료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2012.9월)에 따른 별도서식 추가 작성

	자치단체명	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자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장명

1. 사업추진 현황(현행기준)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위치 :

○ 시설용량 :

○ 사업기간 :

사업기대효과

○

○

사업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yyyy. mm. dd :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자체 (지방비)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용자	출연 (출자)			
금액								
지원비율(%)								

사업진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시행주체	예산액	용역수행	용역결과 총사업비
	착수	완료				
◦ 타당성조사	yy.mm.dd	yy.mm.dd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 사						

□ 계약체결 현황

○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								
-								
◦ 미계약분								
-								
-								

○ 보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yy.mm.dd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yy.mm.dd			
◦ 감리비		yy.mm.dd			
◦ 시설부대비		yy.mm.dd			
합 계		yy.mm.dd			

2. 총사업비 변경요구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행 : 백만원		변경요구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B)	증감		변경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변경요구 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

○ 변경요구 사유

※ 변경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예시] 1. 시설용량 증가(당초 8,000m³/일 → 변경 10,000m³/일)

2. 주민친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 미반영시 문제점

□ 총사업비 변경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변경 요구(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 물량변동					
◦ 물가변동 ^{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2.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물가변동 ^{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주2)}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 ^{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 ※ 공사비는 물량변동,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대별하고, 그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
 - 물량증감 및 공법변경내용은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표기
 - ※ 직접보상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비를 기입
 - ※ 간접보상 :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기입
 - ※ 변경사유는 시설확대, 추가 등 세부 변경요인별로 기재
 - ※ 총사업비 변경요구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변경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협의한 후 변경요구
 - ※ 증빙서류 첨부
 - 도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등 내역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설계서 등 첨부), 관급, 설계용역, 감리계약서 사본 및 용지매입서 사본 등
 - 용지(보상)비 변경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서류 등
- 주1)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주2) 품목조정율에 의한 감리비 물가변경금액의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 (A)	변경 요구(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 원인자부담금					
◦ 기타					

□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3까지		'24		'25예산 요구	'26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								
◦ 세부구분								
◦ 세부구분								
2.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총사업비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 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 액	조정 액	적용시기		요구 액	조정 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3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가 승인한 금액 기입

□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 사업담당자 및 설계자 검토의견

사업담당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식 9] ⇒ 시·도 작성서식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

시·도 명

I.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A)	변경 요구	조정 요구(B)	B-A	%	
소관합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변경요구는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을 기입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e-mail :)

II.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조정 요구	현행 (A)	조정 요구(B)	B-A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조정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III.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단위사업장명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요구

현 행 : 백만원		조 정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	조정 요구(B)	증감		조정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 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기타					

시·도지사 검토반영 내용

○ (※시·도에서 작성)

□ 총사업비 조정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 물량변동						
◦ 물가변동						
2.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물가변동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 원인자부담금						
◦ 기타						

II.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조정내역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사업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 또는 세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조정사유
	현행	변경 요구	조정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B-A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단위사업장명)	'18.2 -'21.3	'18.2 -'22.5	'18.2 -'22.5						
· (단위사업장명)									
·									

※ 변경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III.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조정

단위사업장명

1.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용량 :
- 사업기간 :

2. 사업추진 경위

- yyyy. mm. dd :
- yyyy. mm. dd :

3.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사유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증감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현행	변경 요구	B-A	%
단위사업장명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 변경 요구는 시·도 조정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총사업비 변경사유

-

※ 변경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예시] 1.시설용량 증가(당초 8,000m³/일 → 변경 10,000m³/일)

2.주민친화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4. 총사업비 조정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yy.mm~yy.mm ⇒ 조정 yy.mm~yy.mm
- 총사업비 : 당초 00000백만원 ⇒ 조정 0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B)	조정(C)	현행대비 증감(C-A)	요구대비 증감(C-B)
사업기간					
총사업비					

○ 세부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감		변경사유
				B-A	%	
합계						
1.공사비						
◦ 물량변동						
◦ 물가변동						
2.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물가변동						
3.시설부대경비						예산편성기준 적용요율 적용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						

○ 조정사유

- 변경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금액 산정 근거 명기할 것

○ 재원분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 원인자부담금						
◦ 기타						

※ 비고란에는 국고 지원 보조율 명기

4.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1까지		'22		'23예산 요구	'24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								
◦ 세부구분								
2.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5. 총사업비 변경연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 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 액	조정 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금액 기입